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9
------	-----

제출년월일 : 1999. 7 . 1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2단계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정비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고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개정 : △57명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2단계구조조정 추진지침 「자치12200-118('99. 6. 15)」
 - 조례 표준안 「자치 12200-10604('99. 6. 30)」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606명”을 “549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93명”을 “536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원
정 원 의 총 수		584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71 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3 명

[별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원
정 원 의 총 수		571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58 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3 명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 별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집행기관의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집행기관의 정원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집행기관의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 별표 2(2000년감축) 및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06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93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 <u>549명</u> -----</p> <p>-----</p> <p>1. ----- : <u>536명</u></p> <p>2. (현행과 같음)</p>